

9. 建設機械管理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38號 1995. 10. 28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멸실·해체·용도폐지·도난·수출등 등
 특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32조의 2 제2항 중 “1년이 되는 날까지”를 “1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 2(건설기계형식신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을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표 및 외관도(제원표의 기재사항
 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
 다)
2. 소음 및 배기가스시험성적서
3. 도로이동시 분해·운반요령(도로법 제
 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건
 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 중 “국립건설시험소의
검사시설 또는 확인검사시설 수준이상
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국립건설시험소
장이 인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를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건설교
통부장관이 별표 13의 2의 시설을 갖추
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하며, 시험기관에서 최초확인검
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시험기관이 발
급하는 별지 제27호의 2 서식의 구조성
능시험확인서를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8호
의 2 및 제8호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10호 중 “건설부장
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의2.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8의3. 높이가 19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제66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
4항 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82조 제1항 중 “성명·주소”를 “성명·주

소(동일 시·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 다)”로, “30일 이내”를 “30일 이내(군복무·국외거주·수형·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로 한다.

제89조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제2조 제2항 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별표 제2호 중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대구직할시”를 “대구광역시”로,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4조,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5항,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제46조 제3항, 제47조 제2항, 제78조, 제84조 제4항, 제90조, 별표 2 제3호, 별표 19, 별표 21 비고,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및 별지 제45호 서식 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제2항 및 제4항, 별지 제22호 서식 뒷면, 별지 제26호 서식 뒷면 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한다.

별표 6의 제1호의 기준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수용도로 제작되거나 특수장소

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이 발휘되도록 제작되는 형식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6의 제4호 차목의 기준란에 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동장치에는 상하좌우로 작동이 원활한 유입시설이 있어야 한다.

별표 8의 제5호 자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동장치에는 상하좌우로 작동이 원활한 유입시설이 있을 것

[별표 13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 주기장면적란중 “ $24\text{m}^2 \times (\text{건설기계대수})^{0.185}$ ”를 “ $24\text{m}^2 \times (\text{건설기계대수})^{0.815}$ ”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 중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농지법등”으로, “도시계획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한다.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

무실이 위치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
치할 수 있다.

별표 16의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2호중 “농지의 보
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농지법등”
으로, “도시계획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
로 한다.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
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
무실이 위치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
치할 수 있다.

별표 22의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 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 을 방해한 때	면허효력 정지 180일
--	--------------------

별표 24의 비고란중 “제7호”를 “제6호 및
제8호”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별지 제26호 서식]
및 [별지 제27호 서식]을 각각별지와 같
이 한다.

[별지 제27호의 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건설부령 제550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
칙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대한 경과조
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 또는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등록
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
용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
호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
어 재교부받을 때에 교체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6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콘크리트 및 폐수수거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
은 1996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검
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8의 개
정규정에 의한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
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13의 2]

건설기계구조 성능시험기관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54조 제1항 관련)

구 분	명 칭	제 원 등
대지 및 건물	1. 대지 2. 건물	옥외검사장·검사대기장등 3,00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옥내검사장·공구실 등 500제곱미터 이상
기술인력	1. 시험반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기사 1급이상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건설기계 시험·검사 또는 관리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다. 건설기계시험원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시험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기사 2급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1급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급이상으로 건설기계 시험·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2인 이상
부대시설	1.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2. 검차대 3. 세차시설	5톤 이상
기계기구	1. 중량계 2. 길이계 3. 각도측정기 4. 시간측정기 5. 엔진동력계 또는 견인출력측정기 6. 건·습구 온도측정기 7. 연료소모량측정기 8. 배기가스분석기	50톤 이상 폭 4미터×높이 6미터×길이 20미터 이상 350마력 이상 유체측정 또는 전자감응식 Co, HC 등

구 분	명 칭	제 원 등
기계기구	9. 매연농도측정기	0~100퍼센트
	10. 속도계시험기	150km/hr 이상
	11. 회전반경시험기	축하중 10톤 이상
	12. 견인력시험기	40톤 이상
	13. 등판능력시험기	정치식 또는 가변식
	14. 소음 및 진동시험기	
	15. 회전속도측정기	5,000rpm 이상
	16. 축전지출력측정기	이동식
	17. 유압시험기	400g/cm ² 이상
	18. 슬럼프콘	
	19. 콘크리트압력측정기	200g/cm ² 이상
20. 공기토출량시험기	전자식 또는 오리피스식	
21. 제동시험기	디지털 또는 전자감응식	

- 비고 : 1. 제1호의 중량계는 평탄한 바닥에서 총하중 50톤 이상, 축하중 10톤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2호의 길이계는 건설기계를 정지한 상태에서 길이·폭·높이를 1밀리밀리 단위까지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3호의 각도측정기는 붐 또는 암각도·전경각·후경각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5호의 견인출력측정기는 건설기계의 엔진을 탈착하지 아니하고 견인출력을 측정함으로써 엔진마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제16호의 축전지출력측정기는 축전지를 동력원으로 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전기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17호의 유압시험기는 건설기계의 주요 유압장치내의 펌프토출량·압력·굴삭력 등의 작업력, 실린더응력, 작동유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7. 제19호의 콘크리트압력측정기는 콘크리트펌프실린더안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8. 제20호의 공기토출량시험기는 공기압축기의 토출성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9. 21호의 제동시험기는 브레이크페달 작동후 정지될 때까지의 제동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승인(변경승인, 신고)신청서 건설기계형식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동일형식수입신고서 ※ 뒷쪽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승 인 : 20일 신 고 : 10일 동일형식 } 5일 수입신고 }	
신 청 (신고) 인	①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건 설 기 계 명		⑤ 규 격
	⑥ 건 설 기 계 형 식		
	⑦ 원 동 기 형 식		
변경승인신청(신고)의 경우		변경 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수 수 료	
		형식(변경)	수입인치
		승인, 신고	20,000원
		동일형식	없음
		수입신고	

※ 구비서류

1. 승인신청서

- ① 건설기계제원표
- ② 건설기계의 설명서와 주요부분의 설계도(수입건설기계의 경우 제원이 기재된 안내서 및 정비지침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성능·안정도 및 주요부분의 강도계산서(수입건설기계의 경우 제작회사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시설 및 기술자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서

- ① 변경 전·후의 제원표
- ② 변경 전·후 성능 등의 대비표
- ③ 건설기계의 설계도(변경승인시에 한한다)
- ④ 강도계산서(변경승인시에 한한다)

3. 형식신고서

- ① 건설기계의 제원표 및 외관도(제원표의 기재사항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 ② 소음·배기가스시험성적서
- ③ 도로 이동시 분해·운반 요령(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4. 동일형식 수입 신고서

- ① 건설기계제원표
- ② 선적서류 사본 및 신용장 사본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제원표 1부
- 2. 외관도(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및 제원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건 설 기 계 제 원 표					
① 건 설 기 계 명			② 제 작 회 사		
③ 형 식			④ 규 격		
⑤ 자 중		kg	축 거	제1축거	
				제2축거	
⑥ 최 고 속 도		km/hr	⑩ 타 이 어	운 전 후 륜	mm
⑦ 등 판 력		도 (무부하)		거 후 륜	mm
⑧ 외 관	전 장		이 어 식	타이어	전 륜 mm
	전 폭			치 수	후 륜 mm
	전 고			최소회전반경	mm
	최저지상고			제 동 거 리	m/km/hr
	형 식			(부하, 무부하)	
⑨ 엔 진	출 력 (정 격 출 력)	출력 HP 또는 p.s/rpm(정격출력)	⑪ 무 한 레 도 캐 식	슈 폭	mm
	최 대 토 오 크	kg.m/rpm		트랙중심간거리	mm
	기 통 수	기통		텀블러중심간거리	mm
	연 료 종 류			트 락 높 이	mm
	제 작 회 사			접 지 압	kg/cm ²
⑫ 작 업 장 치		(기종별로 표시)			
⑬ 비 고					

◇개정이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1995. 1. 5. 법률 제4,900호)하여 특정한 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절차를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거나 운행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절차 및 신고서식을 정함(제44조의 2).
- 나. 신고로 제작한 건설기계에 대한 최초확인검사를 국립건설시험소외에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19미터 이상인 대형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기계가 있는 현장에서 최초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4조 및 별표 13의 2).
- 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주소변경이 동일 시·도 안에서의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제82조).
- 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폐콘크리트 및 폐수수거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함(별표 6).
- 마.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건설기계매매업의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연접구까지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연접한 시·군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함(별표 16).

〈건설교통부 제공〉